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 서 명)	행정안전부 (교부세과)
연 월 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지방재정을 건전화하고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별 단위비용 금액을 조정하고,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 산정을 위한 산정방식과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비중유지계수를 조정하며, 기준재정수요액 보정수요 중 축산에 대한 재정수요 가중치를 50퍼센트에서 100퍼센트로 상향하고, 수산 수요 및 청년 지원 수요를 보정수요 항목에 각각 추가하며, 자체노력과 관련된 반영항목 중 지방보조금 절감 가중치를 50퍼센트에서 100퍼센트로 상향하고, 감면조례에 따른 감면액 페널티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불합리한 산정방식 합리화(제7조제2항, 별표5)

- 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정산분의 분할 반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 2) 경상세외수입 수입액 중 청산금 수입, 매각 사업수입, 배당금 수입을 제외

나. 인구변화 대응력 강화를 위한 보정수요 개편(별표4)

- 1) 보정인구(외국인) 수요를 다문화 수요에 통·폐합하고, 가중치 및 시·도, 시·군·구간 반영비율을 조정
- 2) 지역청년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청년 지원 수요를 신설

- 3) 외부효과가 큰 시설이 소재한 지역에 유리하도록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수요를 개편하고 일몰을 2026년까지 연장

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보정수요 개편(별표4)

- 1) 인구밀도가 높은 지리적 특성으로 보정수요 산정 시 불리했던 연륙 도서(連陸島嶼)가 낙후지역에 포함될 수 있는 근거 마련
- 2) 보호 및 규제지역 수요 산정 대상에 공원자연보전지구,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을 추가
- 3) 기후변화에 따른 어업 피해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산 수요 신설

라. 재난안전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보정수요 개편(별표4)

- 1) 대형·장기화된 자연재난에 대비하고, 생활밀착형 안전투자에 중점 지원하도록 재난안전투자 수요 일몰을 3년 연장
- 2) 교통약자에 대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취약계층 보호구역 수요 일몰을 3년 연장
- 3)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복구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축산 수요 확대

마.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위한 자체노력 개편(별표6)

- 1) 지방보조금 절감 반영항목 가중치를 50%에서 100%로 상향
- 2) 감면규모 내 조례감면 페널티는 폐지하되, 감면규모 초과하거나 법령을 초과한 감면액의 페널티는 확대
- 3) 지방자치단체의 징수의욕 고취를 위해 지방세 징수율 제고 산정방식을 전년대비에서 3년 평균 대비 증감으로 개선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10. 31. ~ 12. 12.), 특기할 사항 없음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다목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3조”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1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8호”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다목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3조”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 회계연도 발생한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정산분부터 5년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반영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기준재정수요액의 보정)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제1항 에 따라 보정된 기준재정수요액 에 추가하여 보정한다. 1. 광역시·도: 다음 각 목의 금 액과 이들 금액의 전전년도 결산액 정산분의 100분의 80 에 해당하는 금액 가.·나. (생 략) 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 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 법」 제43조에 따른 대도 시 재정특례보전금 2.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 2조제4호에 따른 통합 지방자 치단체(이하 이 호에서 “통합 지방자치단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나. (생 략) 3.·4. (생 략) 제7조(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 ① 영 제8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	제5조(기준재정수요액의 보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 -----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1조----- -----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8호----- ----- ----- ----- 가.·나. (현행과 같음) 3.·4. (현행과 같음) 제7조(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 ① -----

액의 보정대상 및 반영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 제 2. (생 략) 3. 시·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과 이들 금액의 전전년도 정산분의 100분의 80에 해당 하는 금액 가.·나. (생 략) 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 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 법」 제43조에 따른 대도 시 재정특례보전금 4. ~ 6. (생 략)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산분의 과다·과소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통교부세 증감률, 지방자치단체별 보통교부세 증 감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u>3년</u>의 범위에서 정산분을 분할하여 반 영할 수 있다.	----- -----. 2. (현행과 같음) 3. ----- ----- -----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u>제61조</u>----- ----- 4. ~ 6. (현행과 같음) ② ----- ----- ----- ----- ----- ----- ----- <u>5년</u>----- ----- -----.
---	---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 대비표 (별표)

[별표 1]

현행					개정안		
측정 항목 · 측정단위별 단위비용(제4조제1항 관련)							
측정 항목		측정단위	표시단위	지방자치단체	단위비용(단위 : 원)	지방자치단체	단위비용(단위 : 원)
1. 일반 행정 비	가. 인건비	공무원 수	명	특별시	66,870,660	특별시	66,870,660
				광역시	66,870,660	광역시	66,870,660
				특별자치시	66,870,660	특별자치시	66,870,660
				도	57,573,060	도	57,573,060
				시	68,624,940	시	68,624,940
				군	68,753,480	군	68,753,480
	나. 일반관리비	공무원 수	명	특별시	31,598,130	특별시	31,598,130
				광역시	31,598,130	광역시	31,598,130
				특별자치시	31,598,130	특별자치시	31,598,130
				도	17,636,200	도	17,636,200
				시	40,369,770	시	40,369,770
				군	36,824,020	군	36,824,020
	다. 안전관리비	인구 수	명	특별시	48,200	특별시	48,200
				광역시	48,200	광역시	48,200
				특별자치시	48,200	특별자치시	48,200
				도	29,100	도	29,100
				시	41,760	시	41,760
				군	168,730	군	168,730

현행						개정안	
2. 문 화 환 경 비	가. 문화관광비	인구 수	명	특별시	<u>119,470</u>	특별시	<u>119,470</u>
				광역시	<u>119,470</u>	광역시	<u>119,470</u>
				특별자치시	<u>119,470</u>	특별자치시	<u>119,470</u>
				도	<u>37,250</u>	도	<u>37,250</u>
	나. 환경보호비	인구 수	명	시	<u>126,390</u>	시	<u>126,390</u>
				군	<u>341,050</u>	군	<u>341,050</u>
				특별시	<u>126,250</u>	특별시	<u>126,250</u>
				광역시	<u>126,250</u>	광역시	<u>126,250</u>
	가. 기초생활보장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수	명	특별자치시	<u>126,250</u>	특별자치시	<u>126,250</u>
				도	<u>14,120</u>	도	<u>14,120</u>
				시	<u>157,480</u>	시	<u>157,480</u>
				군	<u>404,980</u>	군	<u>404,980</u>
3. 사 회 복 지 비	가. 기초생활보장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수	명	특별시	<u>635,830</u>	특별시	<u>635,830</u>
				광역시	<u>635,830</u>	광역시	<u>635,830</u>
				특별자치시	<u>635,830</u>	특별자치시	<u>635,830</u>
				도	<u>265,470</u>	도	<u>265,470</u>
	나. 노인복지비	노령인구 수	명	시	<u>262,690</u>	시	<u>262,690</u>
				군	<u>374,300</u>	군	<u>374,300</u>
				특별시	<u>1,251,990</u>	특별시	<u>1,251,990</u>
				광역시	<u>1,251,990</u>	광역시	<u>1,251,990</u>
	가. 기초생활보장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수	명	특별자치시	<u>1,251,990</u>	특별자치시	<u>1,251,990</u>
				도	<u>185,940</u>	도	<u>185,940</u>
				시	<u>1,012,500</u>	시	<u>1,012,500</u>
				군	<u>1,112,490</u>	군	<u>1,112,490</u>

현행						개정안	
4.	다. 아동복지비	아동 수	명	특별시	<u>1,901,650</u>	특별시	<u>1,901,650</u>
				광역시	<u>1,901,650</u>	광역시	<u>1,901,650</u>
				특별자치시	<u>1,901,650</u>	특별자치시	<u>1,901,650</u>
				도	<u>358,450</u>	도	<u>358,450</u>
				시	<u>1,317,700</u>	시	<u>1,317,700</u>
				군	<u>2,066,270</u>	군	<u>2,066,270</u>
	라. 장애인복지비	등록장애인 수	명	특별시	<u>2,082,590</u>	특별시	<u>2,082,590</u>
				광역시	<u>2,082,590</u>	광역시	<u>2,082,590</u>
				특별자치시	<u>2,082,590</u>	특별자치시	<u>2,082,590</u>
				도	<u>261,380</u>	도	<u>261,380</u>
				시	<u>1,272,530</u>	시	<u>1,272,530</u>
				군	<u>1,224,720</u>	군	<u>1,224,720</u>
	마. 보건사회복지비	인구 수	명	특별시	<u>161,870</u>	특별시	<u>161,870</u>
				광역시	<u>161,870</u>	광역시	<u>161,870</u>
				특별자치시	<u>161,870</u>	특별자치시	<u>161,870</u>
				도	<u>48,060</u>	도	<u>48,060</u>
				시	<u>129,920</u>	시	<u>129,920</u>
				군	<u>283,690</u>	군	<u>283,690</u>
4.	가. 농업비	경지 면적	천제곱미터	특별시	<u>267,540</u>	특별시	<u>267,540</u>
				광역시	<u>267,540</u>	광역시	<u>267,540</u>
				특별자치시	<u>267,540</u>	특별자치시	<u>267,540</u>
				도	<u>90,080</u>	도	<u>90,080</u>
				시	<u>387,990</u>	시	<u>387,990</u>
				군	<u>367,980</u>	군	<u>367,980</u>

현행						개정안	
지역 경 제 비	나. 임수산비	산림·어장·갯벌 면적	천제곱미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시 군	<u>89,660</u> <u>89,660</u> <u>89,660</u> <u>92,390</u> <u>47,780</u> <u>42,880</u>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시 군	<u>89,660</u> <u>89,660</u> <u>89,660</u> <u>92,390</u> <u>47,780</u> <u>42,880</u>
	다. 산업경제비	사업체 종사자 수	명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시 군	<u>301,070</u> <u>301,070</u> <u>301,070</u> <u>136,600</u> <u>244,030</u> <u>412,730</u>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시 군	<u>301,070</u> <u>301,070</u> <u>301,070</u> <u>136,600</u> <u>244,030</u> <u>412,730</u>
	라. 도로관리비	도로 면적	천제곱미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시 군	<u>6,724,250</u> <u>6,724,250</u> <u>6,724,250</u> <u>8,470,940</u> <u>7,994,310</u> <u>10,455,100</u>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시 군	<u>6,724,250</u> <u>6,724,250</u> <u>6,724,250</u> <u>8,470,940</u> <u>7,994,310</u> <u>10,455,100</u>
	마. 교통관리비	자동차 대수	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시 군	<u>155,400</u> <u>155,400</u> <u>155,400</u> <u>39,790</u> <u>236,630</u> <u>254,540</u>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시 군	<u>155,400</u> <u>155,400</u> <u>155,400</u> <u>39,790</u> <u>236,630</u> <u>254,540</u>

현행						개정안	
	바. 지역관리비	행정구역 면적	천제곱미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시 군	<u>325,620</u> <u>325,620</u> <u>325,620</u> <u>9,100</u> <u>111,480</u> <u>48,410</u>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시 군	<u>325,620</u> <u>325,620</u> <u>325,620</u> <u>9,100</u> <u>111,480</u> <u>48,410</u>
※ 단위비용 산정방식 : $\frac{\text{동종 지방자치단체의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의 합}}{\text{동종 지방자치단체의 측정항목별 측정단위 수치의 합}}$							

[별표 2]

현행				개정안					
측정 항목별 표준 행정수요액 산정 방식(제4조 제2항 관련)									
경비의 종류		산정 방식		비고(₩)		산정 방식		비고(₩)	
1. 인건비		시·도 시·군 · 구	Yi = 기준인건비 × ($\frac{\text{해당 지방자치단체 전년도 일반회계 인건비 일반재원}}{\text{해당 지방자치단체 전년도 인건비(일반회계+특별회계)}}$) × ω	<u>특별시(0.8113)</u> <u>광역시(0.7997)</u> <u>특별자치시(0.8028)</u> <u>도(0.7883)</u> <u>시(0.7949)</u> <u>군(0.7781)</u> <u>구(0.8261)</u>		시·도 시·군 · 구	Yi = 기준인건비 × ($\frac{\text{해당 지방자치단체 전년도 일반회계 인건비 일반재원}}{\text{해당 지방자치단체 전년도 인건비(일반회계+특별회계)}}$) × ω	<u>특별시(0.8113)</u> <u>광역시(0.7997)</u> <u>특별자치시(0.8028)</u> <u>도(0.7883)</u> <u>시(0.7949)</u> <u>군(0.7781)</u> <u>구(0.8261)</u>	
			※ 특별회계에 있는 소방인건비는 일반회계로 간주하되, 소방안전교부세로 충당되는 소방인건비는 제외한다.				※ 특별회계에 있는 소방인건비는 일반회계로 간주하되, 소방안전교부세로 충당되는 소방인건비는 제외한다.		
2. 일반관리비		시·도	<u>Yi = [3654.278 + 35.5712(Ge + La)] × ω</u>	<u>특별시(0.7483)</u> <u>광역시(0.7109)</u> <u>특별자치시(0.8055)</u> <u>도(0.4852)</u> <u>시(1.0523)</u> <u>군(0.8958)</u> <u>구(0.9108)</u>		시·도	<u>Yi = [3654.278 + 35.5712(Ge + La)] × ω</u>	<u>특별시(0.7483)</u> <u>광역시(0.7109)</u> <u>특별자치시(0.8055)</u> <u>도(0.4852)</u> <u>시(1.0523)</u> <u>군(0.8958)</u> <u>구(0.9108)</u>	
		시·군 · 구	<u>Yi = [3654.278 + 35.5712(Ge + La)] × ω</u>			시·군 · 구	<u>Yi = [3654.278 + 35.5712(Ge + La)] × ω</u>		
		※ Ge: 기준인건비 공무원 수, La: 지방의원 수				※ Ge: 기준인건비 공무원 수, La: 지방의원 수			

현행				개정안			
3. 안전관리비	시·도	$\ln Y_i = [1.6658 + 0.55042 \ln P + 0.26423 \ln(Df + Fs)] + \ln \omega$	<u>특별시(0.6353)</u> <u>광역시(0.8205)</u> <u>특별자치시(0.7571)</u> <u>도(0.9297)</u> <u>시(1.0254)</u> <u>군(0.8726)</u> <u>구(0.7367)</u>	시·도	$\ln Y_i = [1.6658 + 0.55042 \ln P + 0.26423 \ln(Df + Fs)] + \ln \omega$	<u>특별시(0.6353)</u> <u>광역시(0.8205)</u> <u>특별자치시(0.7571)</u> <u>도(0.9297)</u> <u>시(1.0254)</u> <u>군(0.8726)</u> <u>구(0.7367)</u>	
	특별자치시	$\ln Y_i = \ln(e^{(1.6658 + 0.55042 \ln P + 0.26423 \ln(Df + Fs))} \times \omega + 0.01169 Sr)$		특별자치시	$\ln Y_i = \ln(e^{(1.6658 + 0.55042 \ln P + 0.26423 \ln(Df + Fs))} \times \omega + 0.01169 Sr)$		
	시·군·구	$Y_i = [(2179.72194 + 0.01744P + 0.00775A + 0.0078Sr)] \times \omega$		시·군·구	$Y_i = [(2179.72194 + 0.01744P + 0.00775A + 0.0078Sr)] \times \omega$		
	※ P: 인구 수, A: 행정구역 면적, Df: 재난관리대상시설 수, Fs: 소방관서 수, Sr: 소화전 길이			※ P: 인구 수, A: 행정구역 면적, Df: 재난관리대상시설 수, Fs: 소방관서 수, Sr: 소화전 길이			
4. 문화관광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Y_i = (30089 + 0.03743P + 0.00174A) \times \omega$	<u>특별시(0.6741)</u> <u>광역시(1.1914)</u> <u>특별자치시(0.9730)</u> <u>도(0.8147)</u> <u>시(0.8931)</u> <u>군(0.6282)</u> <u>구(0.8208)</u>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Y_i = (30089 + 0.03743P + 0.00174A) \times \omega$	<u>특별시(0.6741)</u> <u>광역시(1.1914)</u> <u>특별자치시(0.9730)</u> <u>도(0.8147)</u> <u>시(0.8931)</u> <u>군(0.6282)</u> <u>구(0.8208)</u>	
	도	$Y_i = (73087 + 0.01452P + 0.00321A) \times \omega$		도	$Y_i = (73087 + 0.01452P + 0.00321A) \times \omega$		
	시·군·구	$\ln Y_i = (0.92014 + 0.37159 \ln P + 0.40035 \ln A) + \ln \omega$		시·군·구	$\ln Y_i = (0.92014 + 0.37159 \ln P + 0.40035 \ln A) + \ln \omega$		
	※ P: 인구 수, A: 행정구역 면적			※ P: 인구 수, A: 행정구역 면적			

현행				개정안			
5. 환경보호비	시·도	$\ln Yi = (4.06608 + 0.35621 \ln P + 0.16876 \ln A) + \ln \omega$	특별시(0.9525) 광역시(0.7741)	시·도	$\ln Yi = (4.06608 + 0.35621 \ln P + 0.16876 \ln A) + \ln \omega$	특별시(0.9525) 광역시(0.7741)	
	시·군 · 구	$\ln Yi = (1.34695 + 0.48664 \ln P + 0.26712 \ln A) + \ln \omega$	특별자치시(1.1420) 도(0.2787) 시(0.9674) 군(0.8315) 구(0.8536)	시·군 · 구	$\ln Yi = (1.34695 + 0.48664 \ln P + 0.26712 \ln A) + \ln \omega$	특별자치시(1.1420) 도(0.2787) 시(0.9674) 군(0.8315) 구(0.8536)	
	※ P: 인구 수, A: 행정구역 면적			※ P: 인구 수, A: 행정구역 면적			
6. 기초생활 보장비	시·도	$\ln Yi = (-1.13303 + 1.02229 \ln BI) + \ln \omega$	특별시(1.2294) 광역시(0.6866)	시·도	$\ln Yi = (-1.13303 + 1.02229 \ln BI) + \ln \omega$	특별시(1.2294) 광역시(0.6866)	
	시·군 · 구	$Yi = (1521.93326 + 0.30618 BI) \times \omega$	특별자치시(0.8978) 도(0.6155) 시(0.7530) 군(0.7427) 구(1.0500)	시·군 · 구	$Yi = (1521.93326 + 0.30618 BI) \times \omega$	특별자치시(0.8978) 도(0.6155) 시(0.7530) 군(0.7427) 구(1.0500)	
	※ BI: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수(생계+의료+주거+교육)			※ BI: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수(생계+의료+주거+교육)			
7. 노인복지비	시·도	$Yi = (73606 + 0.33281 Sc) \times \omega$	특별시(0.7035) 광역시(1.1326)	시·도	$Yi = (73606 + 0.33281 Sc) \times \omega$	특별시(0.7035) 광역시(1.1326)	
	특별자치시	$Yi = (73606 + 0.33281 Sc) \times \omega + 5.01168 Sh$	특별자치시(0.3751)	특별자치시	$Yi = (73606 + 0.33281 Sc) \times \omega + 5.01168 Sh$	특별자치시(0.3751)	
	시·군 · 구	$\ln Yi = (2.01532 + 0.71727 \ln Sc + 0.17535 \ln Sh) + \ln \omega$	도(0.4143) 시(1.0550) 군(0.8428) 구(0.7960)	시·군 · 구	$\ln Yi = (2.01532 + 0.71727 \ln Sc + 0.17535 \ln Sh) + \ln \omega$	도(0.4143) 시(1.0550) 군(0.8428) 구(0.7960)	
	※ Sc: 노령인구 수, Sh: 경로당 수(신고)			※ Sc: 노령인구 수, Sh: 경로당 수(신고)			

현행				개정안			
8. 아동복지비	시·도	$\ln Yi = (1.62531 + 0.85052 \ln Ch) + \ln \omega$	특별시(1.2114) 광역시(0.8574)	시·도	$\ln Yi = (1.62531 + 0.85052 \ln Ch) + \ln \omega$	특별시(1.2114) 광역시(0.8574)	
	시·군·구	$\ln Yi = (3.09322 + 0.74859 \ln Ch) + \ln \omega$	특별자치시(0.9834) 도(0.5344) 시(0.9780) 군(0.9038) 구(0.8924)	시·군·구	$\ln Yi = (3.09322 + 0.74859 \ln Ch) + \ln \omega$	특별자치시(0.9834) 도(0.5344) 시(0.9780) 군(0.9038) 구(0.8924)	
	※ Ch: 아동 수			※ Ch: 아동 수			
9. 장애인 복지비	시·도	$\ln Yi = (4.52784 + 0.59219 \ln Dp) + \ln \omega$	특별시(1.9041) 광역시(1.2375)	시·도	$\ln Yi = (4.52784 + 0.59219 \ln Dp) + \ln \omega$	특별시(1.9041) 광역시(1.2375)	
	시·군·구	$Yi = (57.08708 + 1.38318 Dp) \times \omega$	특별자치시(0.6485) 도(0.4255) 시(0.9177) 군(0.8773) 구(0.8380)	시·군·구	$Yi = (57.08708 + 1.38318 Dp) \times \omega$	특별자치시(0.6485) 도(0.4255) 시(0.9177) 군(0.8773) 구(0.8380)	
	※ Dp: 등록장애인 수			※ Dp: 등록장애인 수			
10. 보건사회 복지비	시·도	$\ln Yi = (-0.02268 + 0.84017 \ln P) + \ln \omega$		시·도	$\ln Yi = (-0.02268 + 0.84017 \ln P) + \ln \omega$		
	특별자치시	$\ln Yi = \ln(e^{(-0.02268 + 0.84017 \ln P) \times \omega + 0.35064 Hf})$	특별시(1.3454) 광역시(0.7446)	특별자치시	$\ln Yi = \ln(e^{(-0.02268 + 0.84017 \ln P) \times \omega + 0.35064 Hf})$	특별시(1.3454) 광역시(0.7446)	
	시·군·구	$Yi = (1336.8884 + 0.08986P + 1.29929Hf) \times \omega$	특별자치시(1.0692) 도(0.5757) 시(0.9426) 군(0.8121) 구(0.8380)	시·군·구	$Yi = (1336.8884 + 0.08986P + 1.29929Hf) \times \omega$	특별자치시(1.0692) 도(0.5757) 시(0.9426) 군(0.8121) 구(0.8380)	
	※ P: 인구 수, Hf: 보건시설 면적			※ P: 인구 수, Hf: 보건시설 면적			

현행				개정안			
11. 농업비	시·도	$\ln Yi = (2.78459 + 0.63998 \ln Ac) + \ln \omega$		시·도	$\ln Yi = (2.78459 + 0.63998 \ln Ac) + \ln \omega$		
	시·군·구	$Yi = (2908.99428 + 0.33228 Ac) \times \omega$	특별시(1.2233) 광역시(0.6647) 특별자치시(0.8568) 도(1.0843) 시(1.0828) 군(1.0324) 구(0.3509)	시·군·구	$Yi = (2908.99428 + 0.33228 Ac) \times \omega$	특별시(1.2233) 광역시(0.6647) 특별자치시(0.8568) 도(1.0843) 시(1.0828) 군(1.0324) 구(0.3509)	
	※ Ac: 경지 면적(전+답+과)			※ Ac: 경지 면적(전+답+과)			
12. 임수산비	시·도	$Yi = [21429 + 0.17322 Fo + 0.02727(Fg+Mf)] \times \omega$		시·도	$Yi = [21429 + 0.17322 Fo + 0.02727(Fg+Mf)] \times \omega$		
	시·군·구	$Yi = [3221.18889 + 0.02603 Fo + 0.06915(Fg+Mf)] \times \omega$	특별시(0.0000) 광역시(0.6756) 특별자치시(0.2021) 도(1.0176) 시(1.1714) 군(1.0463) 구(0.4800)	시·군·구	$Yi = [3221.18889 + 0.02603 Fo + 0.06915(Fg+Mf)] \times \omega$	특별시(0.0000) 광역시(0.6756) 특별자치시(0.2021) 도(1.0176) 시(1.1714) 군(1.0463) 구(0.4800)	
	※ Fo: 산림 면적, Fg: 어장 면적, Mf: 갯벌 면적			※ Fo: 산림 면적, Fg: 어장 면적, Mf: 갯벌 면적			
13. 산업경제비	시·도	$\ln Yi = (4.54728 + 0.56489 \ln Ce) + \ln \omega$		시·도	$\ln Yi = (4.54728 + 0.56489 \ln Ce) + \ln \omega$		
	시·군·구	$Yi = (7814.79368 + 0.08097 Ce) \times \omega$	특별시(0.5942) 광역시(1.1596) 특별자치시(0.6409) 도(0.7865) 시(1.8232) 군(1.0664) 구(0.2223)	시·군·구	$Yi = (7814.79368 + 0.08097 Ce) \times \omega$	특별시(0.5942) 광역시(1.1596) 특별자치시(0.6409) 도(0.7865) 시(1.8232) 군(1.0664) 구(0.2223)	
	※ Ce: 사업체 종사자 수			※ Ce: 사업체 종사자 수			

현행				개정안			
14. 도로관리비	시·도	$\ln Yi = (3.81032 + 0.81875 \ln Ro) + \ln \omega$	특별시(0.5030) 광역시(0.7971)	시·도	$\ln Yi = (3.81032 + 0.81875 \ln Ro) + \ln \omega$	특별시(0.5030) 광역시(0.7971)	
	시·군·구	$Yi = (8979.29014 + 4.22049 Ro) \times \omega$	특별자치시(0.9412) 도(1.0769) 시(1.2813) 군(0.9112) 구(0.7059)	시·군·구	$Yi = (8979.29014 + 4.22049 Ro) \times \omega$	특별자치시(0.9412) 도(1.0769) 시(1.2813) 군(0.9112) 구(0.7059)	
	※ Ro: 도로(포장+비포장+미개통) 면적			※ Ro: 도로(포장+비포장+미개통) 면적			
15. 교통관리비	시·도	$\ln Yi = (2.75783 + 0.60939 \ln Ca) + \ln \omega$	특별시(0.6751) 광역시(1.9533)	시·도	$\ln Yi = (2.75783 + 0.60939 \ln Ca) + \ln \omega$	특별시(0.6751) 광역시(1.9533)	
	특별자치시	$\ln Yi = \ln(e^{(2.75783 + 0.60939 \ln Ca) \times \omega + 0.01546A})$	특별자치시(0.3148)	특별자치시	$\ln Yi = \ln(e^{(2.75783 + 0.60939 \ln Ca) \times \omega + 0.01546A})$	특별자치시(0.3148)	
	시·군·구	$\ln Yi = (-6.5351 + 0.65719 \ln Ca + 0.65507 \ln A) + \ln \omega$	도(0.7528) 시(2.0533) 군(1.0200) 구(0.6536)	시·군·구	$\ln Yi = (-6.5351 + 0.65719 \ln Ca + 0.65507 \ln A) + \ln \omega$	도(0.7528) 시(2.0533) 군(1.0200) 구(0.6536)	
	※ Ca: 자동차 대수, A: 행정구역 면적			※ Ca: 자동차 대수, A: 행정구역 면적			
16. 지역관리비	특별시·광역시·시	$\ln Yi = (2.09767 + 0.35909 \ln A + 0.31487 \ln P) + \ln \omega$	특별시(7.3193) 광역시(1.2805)	특별시·광역시·시	$\ln Yi = (2.09767 + 0.35909 \ln A + 0.31487 \ln P) + \ln \omega$	특별시(7.3193) 광역시(1.2805)	
	특별자치시	$\ln Yi = \ln(e^{(2.09767 + 0.35909 \ln A + 0.31487 \ln P) \times \omega + 0.04031 Ri})$	특별자치시(0.9393)	특별자치시	$\ln Yi = \ln(e^{(2.09767 + 0.35909 \ln A + 0.31487 \ln P) \times \omega + 0.04031 Ri})$	특별자치시(0.9393)	
	도	$Yi = (76050 + 0.00105A + 0.00725P) \times \omega$	도(0.9267) 시(1.2224) 군(0.9571)	도	$Yi = (76050 + 0.00105A + 0.00725P) \times \omega$	도(0.9267) 시(1.2224) 군(0.9571)	
	시·군·구	$Yi = (-2362.41476 + 0.02859A + 0.07869P + 0.07176Ri) \times \omega$	구(0.7972)	시·군·구	$Yi = (-2362.41476 + 0.02859A + 0.07869P + 0.07176Ri) \times \omega$	구(0.7972)	
	※ A: 행정구역 면적, P: 인구 수, Ri: 하천 길이			※ A: 행정구역 면적, P: 인구 수, Ri: 하천 길이			

현행	개정안
비고 1. 인구 수는 기준시점의 최근 3년간 평균 인구 수를 적용한다. 2. “ω(비중유지계수)”란 경비별·지방자치단체 유형별 비중유지계수를 말한다. 3.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 산정 시 통계량이 없는 경우 관련 절편값은 0으로 처리한다.	

[별표 4]

현행		개정안	
지역균형수요 등 보정수요 산정방식(제5조제2항제4호 관련)			
유형별 측정항목	산정방식	유형별 측정항목	산정방식
1. 지역균형			
가. (생략)		(현행과 같음)	
나. (생략)		(현행과 같음)	
다. (생략)		(현행과 같음)	
라. (생략)		(현행과 같음)	
마. (생략)		(현행과 같음)	
바. (생략)		(현행과 같음)	
사. (생략)		(현행과 같음)	
아. <u>축산</u> (시·군·구)	• $[\text{축산 마릿수}(\text{소}+\text{돼지} \times \frac{1}{3}) + \text{가금류 마릿수}(\text{닭} \cdot \text{오리} \times \frac{1}{80})] \times \text{동종 지방자치단체별 기준 (소) 마릿수 1마리당 축산예산* 일반재원} \times \underline{50\%}$ *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축산 관련 세출예산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 수요 산정액의 30%는 시·도, 70%는 해당 시·군·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아. <u>축산·수산</u> (시·군·구)	① <u>축산</u> • $[\text{축산 마릿수}(\text{소}+\text{돼지} \times \frac{1}{3}) + \text{가금류 마릿수}(\text{닭} \cdot \text{오리} \times \frac{1}{80})] \times \text{동종 지방자치단체별 기준 (소) 마릿수 1마리당 축산예산* 일반재원} \times \underline{100\%}$ *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축산 관련 세출예산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 수요 산정액의 30%는 시·도, 70%는 해당 시·군·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신설>		① <u>수산</u> • $\text{어류양식 마릿수} \times \text{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어류 1마리당 수산예산* 일반재원} \times 30\%$ *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수산 관련 세출예산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 수요 산정액의 30%는 시·도, 70%는 해당 시·군·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현행		개정안	
자. (생략)		(현행과 같음)	
차. (생략)		(현행과 같음)	
카. 낙후지역 등 (시·군·구)	① (생략)	카. 낙후지역 등 (시·군·구)	①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성장촉진지역		⑤ 성장촉진지역
	• [(성장촉진지역(「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인구수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인구 1인당 지역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 × 70% + (성장촉진지역 면적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행정구역 면적 1천㎡당 지역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 × 30%] × 40% ※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시·군 중 직전년도의 재정력지수가 0.2 이하인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성장촉진지역에 포함시켜 산정하되, 산정액의 50%만 반영한다. ※ 수요 산정액의 10%는 시·도, 90%는 해당 시·군·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 [(성장촉진지역(「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인구수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인구 1인당 지역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 × 70% + (성장촉진지역 면적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행정구역 면적 1천㎡당 지역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 × 30%] × 40% ※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시·군 중 직전년도의 재정력지수가 0.2 이하인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성장촉진지역에 포함시켜 산정하되, 산정액의 50%만 반영한다. ※ 수요 산정액의 10%는 시·도, 90%는 해당 시·군·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타. (생략)		(현행과 같음)	
파. 보호 및 규제구역 (시·군·구)	① (생략)	파. 보호 및 규제구역 (시·군·구)	①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② 환경보호 규제지역 • 환경보호 규제지역* 면적 × 120% × 1천㎡당 토지분 재산세 평균 징수액 × 20% * “환경보호 규제지역”이란 자연환경보전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말한다), 상수원보호구역(「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역을 말한다), 수변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을 말한다) <u>및 백두대간보호지역(「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을 말한다)을 말한다.</u>		② 환경보호 규제지역 • 환경보호 규제지역* 면적 × 120% × 1천㎡당 토지분 재산세 평균 징수액 × 20% * “환경보호 규제지역”이란 자연환경보전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말한다), 상수원보호구역(「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역을 말한다), 수변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을 말한다), <u>백두대간보호지역(「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을 말한다) 및 공원자연보존지구(「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구를 말한다.),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을 말한다.</u>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2. 지역관리			
가. 보정인구 (시·군·구)	① <u>군인·의무경찰·의무소방대원·수용자</u> • <u>[군인(미군 및 미군속과 그 가족을 포함한다) 수 + (의무경찰 수 × 5/12) + (의무소방대원 수 × 6/12) + 수용자 수]</u> × 동종 지방자치단 체별 인구 1인당 표준행정수요액(A + B + C)* * A: 환경보호비, B: 도로관리비, C: 지역관 리비 ※ 수요 산정액의 40%는 시·도, 60%는 해 당 시·군·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가. 보정인구 (시·군·구)	① <u>군인·수용자</u> • <u>[군인(미군 및 미군속과 그 가족을 포함한다) 수 + 수용자 수]</u>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인구 1인당 표준행정수요액(A + B + C)* * A: 환경보호비, B: 도로관리비, C: 지역관 리비 ※ 수요 산정액의 40%는 시·도, 60%는 해당 시·군·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u>외국인</u> • <u>외국인(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자를 말한다) 수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인구 1인당 표준행정수요액(A + B)* × 105%</u> * A: 환경보호비, B: 지역관리비 ※ 수요 산정액의 20%는 시·도, 80%는 해 당 시·군·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u><삭제></u>
	나. (생략)		(현행과 같음)
	다. (생략)		(현행과 같음)
라. (생략)	(현행과 같음)		
마. 공원 (시·군·구)	① 자연공원 • 자연공원 <u>면적</u>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행정 구역 면적 1천㎡당 환경보호비 표준행정수요액	마. 공원 (시·군·구)	① 자연공원 • 자연공원 <u>관리면적</u>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행 정구역 면적 1천㎡당 환경보호비 표준행정수요액

현행		개정안	
	※ 수요 산정액의 20%는 시·도, 80%는 해당 시·군·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 수요 산정액의 20%는 시·도, 80%는 해당 시·군·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바. (생략)	① (생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② (생략)		(현행과 같음)
3. 사회복지			
가. (생략)		(현행과 같음)	
나. (생략)		(현행과 같음)	
다. 노인요양시설 (시·도)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Y_i = 5746.41774 + 1.59728R_a$ • 도: $Y_i = 11719 + 3.27672R_a$ ※ R_a: 노인요양급여 지급대상자	다. 노인요양시설 (시·도)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Y_i = 5746.41774 + 1.59728R_a$ • 도: $Y_i = 11719 + 3.27672R_a$ ※ R_a: 노인요양급여 지급대상자
라. (생략)		(현행과 같음)	
마. (생략)		(현행과 같음)	
바. (생략)		(현행과 같음)	
사. (생략)		(현행과 같음)	
아. 다문화 (시·군·구)	• (등록외국인 수 + 국적취득자 수 + 국제결혼 가정자녀 수 + 북한이탈주민 수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자 수)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인구 1인당 <u>보건사회복지비 표준행정수요액</u> ※ 수요 산정액의 50%는 시·도, 50%는 해당 시·군·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아. 다문화 (시·군·구)	• (등록외국인 수 + 국적취득자 수 + 국제결혼 가정자녀 수 + 북한이탈주민 수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자 수)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인구 1인당 <u>표준행정수요액(A+B+C)* × 110%</u> <u>* A: 환경보호비, B: 지역관리비, C: 보건사회복지비</u> ※ 수요 산정액의 20%는 시·도, 80%는 해당 시·군·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자. (생략)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4. 시책수요 등			
가. 취약계층보호구역 (시·군·구)	• 취약계층 보호구역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취약계층 보호구역 1구역당 안전관리비 표준 행정수요액 × 5% ※ “취약계층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을 말한다. ※ 수요산정액의 20%는 시·도, 80%는 해당 시·군·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 <u>2023년 산정분</u>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가. 취약계층보호구역 (시·군·구)	• 취약계층 보호구역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취약계층 보호구역 1구역당 안전관리비 표준 행정수요액 × 5% ※ “취약계층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을 말한다. ※ 수요산정액의 20%는 시·도, 80%는 해당 시·군·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 <u>2026년 산정분</u>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나. 고용감소지역 (시·군·구)	•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구 수(아동 및 노령인구 제외)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인구(아동 및 노령인구 제외) 1인당 일반재원* × 120% * 고용감소지역(「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u>및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u>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노동, 산업·중소	나. 고용감소지역 (시·군·구)	•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구 수(아동 및 노령인구 제외)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인구(아동 및 노령인구 제외) 1인당 일반재원* × 120% * 고용감소지역(「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u>「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지</u>

현행		개정안	
	기업, 산업단지, 평생·직업교육 관련 세출예산 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 2023년 산정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하되, 2023년도분의 가중치는 120%를 50%로 변경 적용한다.		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노동, 산업·중소기업, 산업단지, 평생·직업교육 관련 세출예산 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 2025년 산정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하되, 고용감소지역 지정기간에 따라 가중치를 변경 적용한다.
다. 일자리 (시·군·구)	• (해당 지방자치단체 실업률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산업경제비 <u>표준행정수요액 평균액</u>) × 3% + [(해당 지방자치단체 고용률 × 조정계수*)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산업경제비 <u>표준행정수요액 평균액</u>] × 3% * 조정계수 = $\frac{\text{동종 지자체 평균 실업률}}{\text{동종 지자체 평균 고용률}}$ ※ 수요 산정액의 30%는 시·도, 70%는 해당 시·군·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 2024년 산정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다. 일자리 (시·군·구)	• (해당 지방자치단체 실업률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산업경제비 <u>표준행정수요액</u>) × 3% + [(해당 지방자치단체 고용률 × 조정계수*)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산업경제비 <u>표준행정수요액</u>] × 3% * 조정계수 = $\frac{\text{동종 지자체 평균 실업률}}{\text{동종 지자체 평균 고용률}}$ ※ 수요 산정액의 30%는 시·도, 70%는 해당 시·군·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 2024년 산정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현행		개정안	
라. 재난안전투자 (시·도, 시·군·구)	• 총예산 대비 안전·보건 예산*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비 표준행정 소요액 × 10% *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공공질서 및 안전, 보건 관련 세출예산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 <u>2023년 산정분</u>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라. 재난안전투자 (시·도, 시·군·구)	• 총예산 대비 안전·보건 예산*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비 표준행정 소요액 × 10% *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공공질서 및 안전, 보건 관련 세출예산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 <u>2026년 산정분</u>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마. (생략)		(현행과 같음)	
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시·도, 시·군·구)	• 공공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전전년도 지방자치단체별 자체재원 결산액 총액 × 50% <u><신설></u> ※ <u>2023년 산정분</u>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시·도, 시·군·구)	• 공공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전전년도 지방자치단체별 자체재원 결산액 총액 × 50% ※ <u>장사, 폐기물 처리 및 하수 처리 시설의 경우 해당 시설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는 가중치를 100%로 적용한다.</u> ※ <u>2023년 산정분</u>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사. 미세먼지 (시·군·구)	• [(해당 지방자치단체 A / 동종 지방자치단체 ΣA) × 동종 지방자치단체 환경보호비 표준행정수요액 × 2%] + [(해당 지방자치단체 B / 동종 지방자치단체 ΣB) × 동종 지방자치단체 환경보호비 표준행정수요액 × 2%] + [(해당 지방자치단체 C / 동종 지방자치단체 ΣC) × 동종 지방자치단체 산업경제비 표준행정수요액 × 4%] + [(해당 지방자치단체 D / 동종 지방자치단체 ΣD) × 동종 지방자치단체 산업경제비 표준행정수요액 × 4%]	사. 미세먼지 (시·군·구)	• [(해당 지방자치단체 A / 동종 지방자치단체 ΣA) × 동종 지방자치단체 환경보호비 표준행정수요액 × 2%] + [(해당 지방자치단체 B / 동종 지방자치단체 ΣB) × 동종 지방자치단체 환경보호비 표준행정수요액 × 2%] + [(해당 지방자치단체 C / 동종 지방자치단체 ΣC) × 동종 지방자치단체 산업경제비 표준행정수요액 × 4%] + [(해당 지방자치단체 D / 동종 지방자치단체 ΣD) × 동종 지방자치단체 산업경제비 표준행정수요액 × 4%]

현행		개정안	
	/ 동종 지방자치단체 ΣD) $\times$ 동종 지방자치단체 산업경제비 표준행정수요액 $\times$ 3%] <u>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대기 및 환경보호 관련 세출예산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예산의</u> ※ A: <u>일반재원 총액</u> <u>해당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총액</u> ※ B: <u>해당 지방자치단체 대기오염 일수*</u> * 대기오염 일수는 PM2.5가 $36\mu\text{g}/\text{m}^3$ 이상인 날을 기준으로 하며, 최근 3년 평균값을 반영한다. ※ C: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등록 대수 ※ D: <u>재생에너지</u> 생산 총량 ※ 수요 산정액의 40%는 시·도, 60%는 해당 시·군·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 2025년 산정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지방자치단체 ΣD) $\times$ 동종 지방자치단체 산업경제비 표준행정수요액 $\times$ 3%] ※ A: <u>총예산 대비 대기·환경보호 예산*</u> <u>*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대기 및 환경보호 관련 세출예산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u> ※ B: <u>대기오염 일수*</u> * 대기오염 일수는 PM2.5가 $36\mu\text{g}/\text{m}^3$ 이상인 날을 기준으로 하며, 최근 3년 평균값을 반영한다. ※ C: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등록 대수 ※ D: <u>신재생에너지</u> 생산 총량 ※ 수요 산정액의 40%는 시·도, 60%는 해당 시·군·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 2025년 산정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아. (생략)		(현행과 같음)	
자. (생략)		(현행과 같음)	
차. 기업 지방이전 지원 (시·도, 시·군·구)	• 대도시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한 기업에 대한 전전년도 지방세 감면액* $\times$ 300%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른 감면액	차. 기업 지방이전 지원 (시·도, 시·군·구)	• 대도시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한 기업에 대한 전전년도 지방세 감면액* $\times$ 300%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른 감면액

현행		개정안							
	<신설>		※ 2025년 산정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카. (생략)		(현행과 같음)							
<신설>		다. 청년 지원 (시·군·구)	• 청년 수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인구 1인당 보건사회복지비 표준행정수요액 × 20% × 재정자립도 반영률 ※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를 적용하여 반영한다.						
			재정자립도	10% 미만	10% 이상 ~ 20% 미만	20% 이상 ~ 30% 미만	30% 이상 ~ 40% 미만	40% 이상 ~ 50% 미만	50% 이상
			반영률	100 %	90%	80%	70%	60%	50%
			※ 수요 산정액의 20%는 시·도, 80%는 해당 시·군·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 2026년 산정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현행	개정안
----	-----

비고

1.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역의 범위는 인구밀도 및 주민 1인당 지방소득세 지표가 모두 전국 면(面) 평균 이하인 읍·면(邑·面) 지역(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면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단서 신설>

2. (생략)

3. (생략)

4. 합계출산율의 유형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합계출산율 1유형: 합계출산율이 0.81명 이상 1.01명 미만인 경우

나. 합계출산율 2유형: 합계출산율이 1.01명 이상 1.21명 미만인 경우

다. 합계출산율 3유형: 합계출산율이 1.21명 이상 1.41명 미만인 경우

라. 합계출산율 4유형: 합계출산율이 1.41명 이상인 경우

5. 문화재보호구역, 환경보호 규제지역, 개발제한구역 및 군사시설

비고

1.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역의 범위는 인구밀도 및 주민 1인당 지방소득세 지표가 모두 전국 면(面) 평균 이하인 읍·면(邑·面) 지역(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면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연륙도서(連陸島嶼)(「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역은 제외한다.) 중 인구밀도 및 1인당 지방소득세 지표가 모두 연륙도서 면(面) 평균 이하인 읍·면(邑·面)의 경우에도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역에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합계출산율의 유형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합계출산율 1유형: 합계출산율이 0.78명 이상 0.98명 미만인 경우

나. 합계출산율 2유형: 합계출산율이 0.98명 이상 1.18명 미만인 경우

다. 합계출산율 3유형: 합계출산율이 1.18명 이상 1.38명 미만인 경우

라. 합계출산율 4유형: 합계출산율이 1.38명 이상인 경우

5. 문화재보호구역, 환경보호 규제지역, 개발제한구역 및 군사시설

현행	개정안
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말한다)의 합산 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면적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1천㎡당 토지분 재산세 평균 징수액의 20% 산정액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가중하여 산정한다. 가. 행정구역 면적의 50% 이상 60% 미만인 경우: <u>10%</u> 나. 행정구역 면적의 60% 이상 70% 미만인 경우: <u>20%</u> 다. 행정구역 면적의 70% 이상 80% 미만인 경우: <u>30%</u> 라. 행정구역 면적의 80% 이상 90% 미만인 경우: <u>40%</u> 마. 행정구역 면적의 90% 이상인 경우: <u>50%</u>	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말한다)의 합산 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면적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1천㎡당 토지분 재산세 평균 징수액의 20% 산정액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가중하여 산정한다. 가. 행정구역 면적의 50% 이상 60% 미만인 경우: <u>15%</u> 나. 행정구역 면적의 60% 이상 70% 미만인 경우: <u>25%</u> 다. 행정구역 면적의 70% 이상 80% 미만인 경우: <u>35%</u> 라. 행정구역 면적의 80% 이상 90% 미만인 경우: <u>45%</u> 마. 행정구역 면적의 90% 이상인 경우: <u>55%</u>

[별표 5]

현행			개정안
지방세와 경상세외수입 등 수입액의 산정방식(제6조 관련)			지방세와 경상세외수입 등 수입액의 산정방식(제6조 관련)
구분		산정방식	산정방식
지방세	보통세	취 득 세 (생략)	(현행과 같음)
		등록면허세 (생략)	(현행과 같음)
		레 저 세 (생략)	(현행과 같음)
		재 산 세 (생략)	(현행과 같음)
		담배소비세 (생략)	(현행과 같음)
		주 민 세 (생략)	(현행과 같음)
		지방소득세 (생략)	(현행과 같음)
		지방소비세 (생략)	(현행과 같음)
	자동차세	전전년도 징수실적 × 연평균 증가율 ※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중 운송업보조금 은 제외한다.	전전년도 징수실적 × 연평균 증가율 ※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중 유가보조금 은 제외한다.
	목적세	< 삭 제 >	(현행과 같음)
경상세외수입 (사용료,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이자수입, 사업수입)		$T_t = \left\{ \sum_{t=1}^3 (a_t + b_t + c_t + d_t + e_t) \right\} \div 3$ [a: 사용료수입액, b: 수수료수입액, c: 재산임대수입액, d: 이자수입액, e: 사업수입액] < 신설 >	$T_t = \left\{ \sum_{t=1}^3 (a_t + b_t + c_t + d_t + e_t) \right\} \div 3$ [a: 사용료수입액, b: 수수료수입액, c: 재산임대수입액, d: 이자수입액, e: 사업수입액] ※ 사업수입액 중 청산금수입, 매각 사업수입, 배당금수입은 제외한다.
시·군 조정교부금(특별 조정교부금은 제외한다) · 시도세 징수교부금·재 정특례보전금·지역상생발 전기금 배분금액 부동산교부세		(생략)	(현행과 같음)
		(생략)	(현행과 같음)

[별표 6]

현행		개정안
자체노력 반영항목 및 산정기준(제8조 관련)		자체노력 반영항목 및 산정기준(제8조 관련)
1. 세출 효율화		1. 세출 효율화
반영항목	산정방식	산정방식
가. 인건비 건전 운영	(생략)	(현행과 같음)
나. 지방의회경비 절감	(생략)	(현행과 같음)
다. 업무추진비 절감	(생략)	(현행과 같음)
라.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생략)	(현행과 같음)
마. 지방보조금 절감	① <math>(1 - \text{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총 결산액 대비 지방보조금 결산액 비중} \div \text{전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총 결산액 대비 지방보조금 결산액 비중}) \times \text{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 보조금 결산액의 } 50\%</math> ※ 재정분권에 따른 전환(이양)사업 수행을 위한 지방보조금은 2026년도 결산분까지는 대상에서 제외하여 산정하고, 2027년도 결산분부터는 포함하여 산정한다. ※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를 대상으로 한다. ② $\text{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보조금 결산액} \times 5\%$	① <math>(1 - \text{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총 결산액 대비 지방보조금 결산액 비중} \div \text{전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총 결산액 대비 지방보조금 결산액 비중}) \times \text{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 보조금 결산액의 } 100\%</math> ※ 재정분권에 따른 전환(이양)사업 수행을 위한 지방보조금은 2026년도 결산분까지는 대상에서 제외하여 산정하고, 2027년도 결산분부터는 포함하여 산정한다. ※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를 대상으로 한다. ② $\text{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보조금 결산액} \times 5\%$

현행		개정안
	※ 전전년도 동종 지방자치단체 중 지방보조금 경비 비중 상위 누적 50%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경비 비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보조금 경비 비중을 뺀 값이 0보다 작을 경우, 결과값을 0으로 본다. * 지방보조금 경비 비중 = 지방보조금 결산액 / 총 결산액 ※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를 대상으로 한다.	※ 전전년도 동종 지방자치단체 중 지방보조금 경비 비중 상위 누적 50%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경비 비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보조금 경비 비중을 뺀 값이 0보다 작을 경우, 결과값을 0으로 본다. * 지방보조금 경비 비중 = 지방보조금 결산액 / 총 결산액 ※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를 대상으로 한다.
바. 예산집행 노력	(생략)	(현행과 같음)
사. 현금성 복지 경비 지출운영	(동종 지방자치단체 중 세출결산액 대비 현금성복지 지출결산액 비중 상위 누적 50% 지방자치단체의 세출결산액 대비 현금성복지 지출결산액 비중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출결산액 대비 현금성복지 지출결산액 비중) × 해당 지방자치단체 현금성 복지 지출결산액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회보장적 현금성 수혜금 및 물품 지원비 예산의 일반재원 총액 ※ 2025년 산정분부터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신설>	(동종 지방자치단체 중 세출결산액 대비 현금성복지 지출결산액 비중 상위 누적 50% 지방자치단체의 세출결산액 대비 현금성복지 지출결산액 비중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출결산액 대비 현금성복지 지출결산액 비중) × 해당 지방자치단체 현금성 복지 지출결산액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회보장적 현금성 수혜금 및 물품 지원비 예산의 일반재원 총액 ※ 2025년 산정분부터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 결과값이 0보다 큰 경우에는 0으로 본다.
비고 1~5. (생략)		비고 1~5.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2. 세입 확충		2. 세입 확충	
반영항목	산정방식	산정방식	
가. 지방세 징수율 제고	① <u>(전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징수율 - 전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징수율)</u>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징수액 × 180% ② (전전년도 동종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징수율 상위 누적 50% 단체 징수율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징수율)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징수액 ※ ①, ② 산정 시 지난 연도분 부과·징수 실적,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지방소비세 부과·징수 실적과 밀반입 담배에 부과되는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징수 실적을 제외한다. ※ “①+②”의 결과값을 반영하되, ②의 값이 0보다 큰 경우에는 0으로 본다.	① <u>(전전전년도 기준 과거 3년간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평균 징수율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징수율)</u>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징수액 × 180% ② (전전년도 동종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징수율 상위 누적 50% 단체 징수율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징수율)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징수액 ※ ①, ② 산정 시 지난 연도분 부과·징수 실적,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지방소비세 부과·징수 실적과 밀반입 담배에 부과되는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징수 실적을 제외한다. ※ “①+②”의 결과값을 반영하되, ②의 값이 0보다 큰 경우에는 0으로 본다.	
나. 지방세 체납액 축소	(생략)	(현행과 같음)	
다. 경상세외 수입 확충	① (1 - 전전년도 기준 과거 3년간 해당 지방자치단체 경상세외수입 평균 징수액 ÷ 전전전년도 기준 과거 3년간 해당 지방자치단체 경상세외수입 평균 징수액) × 전전년도 기준 과거 3년간 해당 지방자치단체 경상세외수입 평균 징수액 × 180% ② (전전년도 동종 지방자치단체 경상세외수입 징수율 상위 누적 50% 단체 징수율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경상세외수입 징수율)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경상세외수입 징수액	① (1 - 전전년도 기준 과거 3년간 해당 지방자치단체 경상세외수입 평균 징수액 ÷ 전전전년도 기준 과거 3년간 해당 지방자치단체 경상세외수입 평균 징수액) × 전전년도 기준 과거 3년간 해당 지방자치단체 경상세외수입 평균 징수액 × 180% ② (전전년도 동종 지방자치단체 경상세외수입 징수율 상위 누적 50% 단체 징수율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경상세외수입 징수율)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경상세외수입 징수액	

현행		개정안	
	※ ①, ② 산정 시 일반회계 경상세외수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u>이자수입,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제외</u>한다. ※ “①+②”의 결과값을 반영하되, ②의 값이 0보다 큰 경우에는 0으로 본다.	※ ①, ② 산정 시 일반회계 경상세외수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u>이자수입은 제외</u>한다. ※ “①+②”의 결과값을 반영하되, ②의 값이 0보다 큰 경우에는 0으로 본다.	
라. 세외수입 채납액 축소	①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채납 누계액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채납 누계액) × 180% ※ 일반회계 세외수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세외수입 징수액 차감 시 전전년도 결손처분분은 제외한다. ※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 비용의 채납액은 세외수입 채납 누계액에서 제외한다. ② (전전년도 동종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채납징수율 상위 누적 50% 단체 채납징수율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채납징수율)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채납액 징수액 <u>※ 전전년도로 이월된 세외수입 채납액 중 결손처분분을 제외한다.</u> ※ “①+②”의 결과값을 반영하되, ②의 값이 0보다 큰 경우에는 0으로 본다.	①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채납 누계액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채납 누계액) × 180% ※ 일반회계 세외수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세외수입 징수액 차감 시 전전년도 결손처분분은 제외한다. ※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 비용의 채납액은 세외수입 채납 누계액에서 제외한다. ② (전전년도 동종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채납징수율 상위 누적 50% 단체 채납징수율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채납징수율)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채납액 징수액 <u>※ 일반회계 세외수입을 대상을 한다. 다만, 전전년도로 이월된 세외수입 채납액 중 결손처분분을 제외한다.</u> ※ “①+②”의 결과값을 반영하되, ②의 값이 0보다 큰 경우에는 0으로 본다.	
마. 적극적 세원 관리	① 탄력세율 적용 [주민세 <u>균등분</u>] [(전전년도 동지역 과세인원 × 표준세율 + 전전년도 읍·면지역 과세인원 × 표준세율) - (전전년도 동지역 과세인원 × 적용세율 + 전전년도 읍·면지역 과세인원 × 적용세율)] × 200%	① 탄력세율 적용 [주민세 <u>개인분</u>] [(전전년도 동지역 과세인원 × 표준세율 + 전전년도 읍·면지역 과세인원 × 표준세율) - (전전년도 동지역 과세인원 × 적용세율 + 전전년도 읍·면지역 과세인원 × 적용세율)] × 200%	

현행	개정안
[지역자원시설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동산분, 재산세, 자동차세 소유분]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법」 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해당 세목의 과세총액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적용세율로 산출한 해당 세목의 과세총액) × 200% ※ 결과값이 0보다 큰 경우에는 0으로 본다. ② (생략)	[지역자원시설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동산분, 재산세, 자동차세 소유분]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법」 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해당 세목의 과세총액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적용세율로 산출한 해당 세목의 과세총액) × 200% ※ 결과값이 0보다 큰 경우에는 0으로 본다. ② (현행과 같음)
바. 지방세 감면액 축소 ①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에 따른 감면액* × 100%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감면액(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감면액,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액, 법령에 따른 감면, 법령에서 정한 감면 범위를 초과하여 조례로 정한 감면 및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한 감면은 제외한다) ②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규모 초과액 + 전전년도 법령에서 정한 감면 범위를 초과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감면액) × 150% <신설> ③ (전전년도 법령에서 정한 최대 감면을 적용액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낮은 감면율을 적용한 실제 감면액*) × 180%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에 따른 감면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 ※ 감면액은 “①+②-③”의 결과값을 반영한다.	(삭제) ①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규모* 초과액 + 전전년도 법령에서 정한 감면 범위를 초과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감면액) × 200%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6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규모 ② (전전년도 법령에서 정한 최대 감면을 적용액 -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낮은 감면율을 적용한 실제 감면액*) × 180%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에 따른 감면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 ※ 감면액은 “①-②”의 결과값을 반영한다.